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	공모 유형	자유공모형	기술료 납부대상	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 시 참조사항	○ 첨단의료, 치료제, 백신 등 신형 바이오메디컬 분야 해외 연수를 지원하여 연구·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 지원목적

-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 지원) 국내 바이오메디컬 분야 공백영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 (핵심연구인력) 감염병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포함한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복수로 구성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① 의약학 계열 전문자격증(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국가면허) 취득한 연구자
 - ② 바이오메디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연구자
 -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학위 무관
- 과제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이중국적자, 외국인 또는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또는 타부처 지원 해외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선정 예정 과제수
중분류	세분류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지원	1년 6개월 이내	100백만원 이내 (50백만원 이내)	9개 내외
	핵심연구인력	1년 이내	100백만원 이내 (50백만원 이내)	17개 내외

- ※ 1차년도 연구기간 6개월 이내, 연구비는 6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
-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및 기간 변동 가능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예시)

지원분야	성과목표	지원내용(예시)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연수활동 보고서* 제출 * 주관 및 해외 연수 기관 멘토 의견서, 출입국 현황 및 진로현황 필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 시장공략을 위한 선도기술을 보유·연구하고 있는 해외 기관 연수 - 바이오헬스 분야(감염병 관련 연구 포함) 요소기술 중 국내공백 영역 및 연수계획 제시
핵심연구인력		

- ※ 제시된 성과목표는 반드시 포함하고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

▶ 특기사항

- 단독과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및 위탁 과제 구성 불가
- 본 과제의 연수자는 현장수요 연계형 혁신인재 지원센터를 통해 관리·운영되는 바, 지원센터의 활동 및 요청에 적극 협조 필수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글로벌 연수를 위한 희망 세부 연구분야 및 연수대상 국가/교류협력 기업 또는 기관을 반드시 명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수대상 기관에 각 1명씩 멘토* 지정
 - * 멘토는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연구비 산정기준
 - 인건비, 체재비, 연수자 준비금, 연구활동비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율편성 후 집행

연수 관련 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		
직접비		간접비
연수자 준비금	그 외 연구비 등	
실비 (왕복항공료, 이주관련 경비, 의료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율 편성	직접비의 5% 이내

- 과제기간 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추가 연구성과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등을 위해 연구성과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기간 내 주관연구책임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연구의 지속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해당사항 없음
------	---------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평가	1. 연구개발 계획(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5)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15)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2. 연구개발 역량(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10) ○ 국외 협력 기관의 우수성·전문성(1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10)
	3. 연구개발 성과(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및 협력 연구의 기대효과(10) ○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